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19-112
번 호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구 구립실버합창단의 창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참여 가능한 합창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목 변경

나. 구립예술합창단 중 구립실버합창단 신설(안 제2조)

다. 실버합창단 정원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실버합창단 단원자격 조항 신설(안 제7조)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8. 1. ~ 8. 21.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2019. 8.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 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
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합창단과 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합창단”을 “서울
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이하 “구립예술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실버합창단(이하 “실버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
시”로, “한다)이”를 “한다)은 구립예술합창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민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로, “구민화합”을 “지역주민간 화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판단되는” 을 “인정하는”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을 각각 “구립 예술합창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의 정원은 8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간 연락 등” 을 “구립예술합창단은 효율적인 운영” 으로, “약간의 임원” 을 “임원” 으로 한다.

제6조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을 “구립예술합창단”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단원의 자격)” 을 “(단원 등의 자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창단” 을 “구립예술합창단”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합창단” 을 “합창단원” 으로, “구민(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구민이 아니어도 됨)” 을 “구민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의 재학생 및 구 소재 학교 학생으로 한다.

3. 실버합창단은 만 56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반주자는 반주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라” 를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의 단원은” 으로, “자는 해당년도” 를 “해당년도” 로,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을 “제1항제2호의 단원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를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을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단원으로서”를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립예술합창단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각각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지도·감독하게 할”을 “지도·감독할”로 한다.

제13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참여는 봉사 활동으로써”를 “구립예술합창단 활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을 “활동”으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u> <u>서울특별시 마포구</u> <u>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합창단과 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명칭)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합창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2. (생략) <u><신 설></u> 제3조(운영) ① <u>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한다.</u> ② <u>구청장은 합창단 및 소년소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u> <u>설치·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u> <u>단</u>----- ----- <u>필요</u>----- -----. 제2조(명칭)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이하 “구립예술합창단”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2. (현행과 같음) <u>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실버합창단(이하 “실버합창단”이라 한다)</u> 제3조(운영) ① <u>서울특별시</u> ----- ----- ----- <u>한다)은 구립예술합창단을</u> -----. ② ----- <u>구립예술합창단</u>-----

합창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시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제5조(구성) ①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각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단장이 된다.

③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

-----.

③ -----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

-----.

제4조(기능) 구립예술합창단-----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 지역
주민간 화합-----
3. 그 밖에 ----- 인정
하는 -----

제5조(구성) ① 구립예술합창단----

-----.

② 구립예술합창단-----
-----.

-----.

③ 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간 연락 등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각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①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구민이 아니어도 됨)

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3. 반주자는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하고, 소년소녀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의 정원은 80명 이내로 한다.

④ 구립예술합창단은 효율적인 운영-----
----- 임원-----
--.

제6조(단장의 직무) ----- 구립예술합창단-----

-----.

제7조(단원 등의 자격) ① 구립예술합창단 -----.

1. 합창단원-----
--- 구민으로 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 및 구 소재 학교 학생으로 한다.

3. 실버합창단은 만 56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반주자는 반주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

재학생

2. 지휘자 및 반주자의 자격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상한연령에 달하는 자는 해당년도 12월31일자로 당연 해측된 것으로 보고,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해측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촉) ①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의 단원은 -- 해당년도 ----- 제1항제2호의 단원은 -----.

제8조(위촉) ①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

제9조(해촉) -----
-----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1. · 2. (현행과 같음)

3. 구립예술합창단-----
구립예술합창단-----

4. 그 밖에 구립예술합창단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10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관리·운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수탁자는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필요할 때는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지휘자, 반주자, 단원 및 임원들의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

----- 구립예술합창단-----
-----.

② ----- 구립예술합창단-----
-----.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구립예술합창단-----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구립예술합창단 -----

-----.
-----.

제11조(지도·감독) ----- 구립예술합창단 -----

----- 지도·감독할 -----
-----.

제13조(경비의 지원) -----
----- 구립예술합창단 활동 -----
----- 활동 -----

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구립실버합창단 운영에 따른 활동경비 및 사례비, 위탁시 위탁비 등
-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기획팀 김동우 (☎ 3153-8354)